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우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우편물 수령을 위해 우체국 방문 시 수령인의 신분증으로 최신(현 거주)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 등 초본을 · 추가 제출받아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어 수령인이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후 우체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우체국 방문 수령인에게 우편물 교부 시 우편물 수령인의 진위(주소지)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편물 수령인의 주민등록 등·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(안 제9조의2, 제10조, 제45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23. ~ 6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8. 제45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

제10조 중 “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
2. 법 제33조에 따른 수취인 진위 확인에 관한 사무

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3조에 따라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편물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편물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사전동의(전자문서의 방법을 포함한다)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2(권한의 위임)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.	제9조의2(권한의 위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27. (생략)	1. ~ 27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28. 제45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<u>공동이용에 관한 사무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제9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<u>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</u>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제10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설></u>	1. <u>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</u>
<u><신설></u>	2. <u>법 제33조에 따른 수취인 진위 확인에 관한 사무</u>

<신 설>

제45조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과
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
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
려는 경우로서 법 제33조에 따
라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
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
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
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
해 우편물을 교부받으려는 사람
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을
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편물
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
사전동의(전자문서의 방법을 포
함한다)를 받아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8163